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96
----------	-------

발의연월일 : 2025. 7. 1.

발 의 자 : 조경태 · 김소희 · 김예지
고동진 · 곽규택 · 김용태
김태호 · 김위상 · 유용원
서범수 · 서명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경우 봄철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겹쳐져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가 어려웠음. 이처럼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산불 등 화재의 특성상 화재의 진화라는 사후적 조치가 아닌 화재의 예방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무인비행장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2항 중 “진화”를 “진화·예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생략)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 · 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 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 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 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진화 · 예방-----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